

開途國의 技術導入制度 概要 <上>

—中南美·아시아·아랍諸國—

技術導入關係機關의 構造와 機能

外國技術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規制하기 위해서 政府 기구내에 설치된 核心的인 部署는 통상적으로 技術 이관에 관여하고 있는 政府部署가 管理하고 있다. 이와같은 政府部署들의 名稱은 다양하며, 또한 그 部署들은 각각 다른 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部署들은 어김없이 국가적인 차원의 技術政策들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政府部署들인 것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政府部署들은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필리핀 및 터키 등의 여러 나라에서 설치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될 전망이다.

技術移管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이와같은 국가기관들은 대부분의 경우 密接한 聯關性이 있는 ①규제 ②협조 ③기술진흥 등의 3가지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규제기능이 優位를 차지하는가 하면 또다른 경우에는 협조 또는 기술진흥 기능이 優位를 차지하기도 한다.

規制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기관들은 技術의 이관, 최종 승인을 위한 건의에 관한 모든 협정들의 내용을 검토하며, 마침내 최종적으로 승인된 협정내용을 작성 보관한다. 또한 이와같은 국가기관들은 기타 수많은 유관 기관들과 더불어 기술도입에 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협정내용의 檢討는 (가) 法制부문—협정내용이 現行 해당국가 法律에 順應하고 있는가의 與否를 결정하며 (나) 技術부문—적절한 技術을

선정하여 그것을 해당 국가에 적응시키며,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며 (다) 經濟부문—해당 사업의 營利的인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사항을 망라한다.

이 국가기관들의 협조기능 내용의 기술 이관은 여러 다른 기관들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는 여러모의 經濟부문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기관들이 취한 조치 및 정책들은 技術 이관의 奏効를 기하기 위해서 모름지기 서로 협력이 도모되어야 한다.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항으로는 이 국가기관들의 기술진흥기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국가기관들은 해당 정부의 정책 내용을 국내 經濟界 및 外國의 기술 공여기관들에게 주시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 論稿는 技術도입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국가들의 정부 행정기구에 관해서 論及하고 있으며, 또한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는 法制 및 行政機構들을 논급하기 위해서 여러나라들의 해당 法律의 발췌문을 인용해서 제시된 法制 및 行政機構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中南美諸國

■ 안데안 協定 ■

技術協定內容에 관한 Cartagena 協定 第84條의 발췌문임. 즉, “技術수입을 위한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권소유자의 姓名 및 職業과 인가자의 姓名 및 職業. 만일 해당 技術 및 그 기술의 使用計劃에 관한 細部內容이 移管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소유자와

인간자간의 상호 협의내용·해당協定の 主題內容 즉, 加工技術, 生産技術, 商標, 特許, 技術協力, 운영요령 및 기술인력 양성, 訓練, 特許權使用料支拂 方法(固定的인 것과 可變的인 것, 部分的인 것, 그리고 可變的인 것에 대한 근거) 정기적으로 支拂되는 고정금액 額數 및 부정기적인 支拂金額의 比率”이며 “會員國이 採擇한 技術移管에 관한 안테안協定の 指針內容”은 外國投資 認可, 등록 및 규제에 관한 指針書이며 外國投資에 관한 모든 出願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投資家의 細部的인 人적사항

(가) 姓名 및 事業種目

(나) 國籍

(다) 理事陣의 構成 內容

(라) 管理 및 其他 人員構成內容

(마) 經濟活動 內容

(바) 會社設立 公證書 사본

2. 投資의 細部事業

(가) 화폐 또는 은행예금 형태의 財源

投資를 위하여 使用되고 있는 화폐·내수자금, 外國에서 도입된 자금, 本社로부터의 융자금액, 기타 다른 出處로부터의 융자금액, 융자에 대해서 支拂될 現行이자.

(나) 工業生産工場, 새로운 기계설비 및 이미 使用중인 기계설비, 새로운 기계 및 이미 使用중인 기계, 部屬品, 작은 보조부속품, 原料 및 中間製品 등의 實質的인 또는 可視的인 資源.

(다) 技術 또는 商標, 産業意匠, 관리능력, 特許를 받았거나 特許를 받지 않은 技術知識 및 代替可能性이 있는 技術등에서 도출된 資源.

秘密技術(Know-how)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表示된다.

i) 物品

見本, 등록되지 않은 모형, 기계류, 工具, 설비, 細部的인 部屬品, 生産製造器具

ii) 技術부문 서류

樣式서류, 견적서, 事業計劃, 도안 및 特許받지 않은 발명내용

iii) 通告內容

製品 또는 제조과정에 관한 細部的인(또는 개선중인) 유의사항, 生産活動을 위한 설명 또는 실효성 있는 권고 사항, 技術分野 策자, 特許에 관한 보충설명, 生産제조 경로, 통계방법, 支拂될 特許權使用料 및 로열티, 受取人에 관한 세부사항.

第19條 技術도입에 관한 계약서는 적어도 下記 사항에 관한 몇개의 條項을 包含해야 한다.

(가) 도입된 技術의 移讓方法 및 闡明.

(나) 直接外國投資등록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유사한 方法으로 表明된 技術移讓에 관련된 모든 物品에 대한 契約金額 및 額數.

(다) 契約有効期間의 결정

第22條 該當國家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유리하고 권고할 수 있는 代替方案을 찾아내고, 또한 업무결과를 해당 理事會에 提出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국가당국은 국제시장에서 여러 産業分野에서 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힘쓴다. 이와같은 업무는 해당국가 또는 부수지역의 技術에 관한 규정 第5章에 의해서 採擇될 내용을 도입한 종합적인 方法에 의해서 보다 促進된다.

第23條 理事會의 要請에 의해서 해당委員會는 1972年 11月 30日 이전에 부수지역의 技術開發을 促進하고 보호하며 또한 현존기술을 개선하여 적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다음 사항들을 망라해야 한다.

(가) 技術의 開發을 促進하며 특히 부수지역에서 開發된 技術 또는 부수지역 生産요인들의 見解들을 効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조성된 特殊한 見解들.

(나) 부수지역의 技術에 의해서 제조된 제품의 제3국에의 수출 開發

(다) 국내저축을 국립 또는 부수지역 조사연구 및 개발센터 設置를 위한 投入

第24條 會員國家의 政府들은 製品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委員會가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형태의 기술 또는 부수지역에서 開發된 技術을 이용해서 제조된 製品購入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理事會의 要請에 의해서 해당 委員會는 會員國들에게 外國의 商標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통상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技術 또는 製品生産을 위해서 그들이 손쉽게 그 技術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로열티지불문제를 야기시키는 製品들에 대해서 稅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도록 提議할 수 있다.

第26條 理事會의 要請에 의해서 해당 委員會는 製品生産過程 및 어떤 會員國에서도 特許權이 인가되지 않은 여러 製品들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 委員會는 이미 인가된 特許權處理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第54條 會員國들은 工業所有權(商標 및 特許) 부수지역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國立工業所有權(商標 및 特許) 사무국과의 연락사무를 관장한다.

(나) 國立工業所有權 사무국을 위해서 工業所有權(商標 및 特許)에 관한 정보를 蒐集 發行한다.

(다) 해당 부수지역에서의 商標의 使用 및 特許利用을 위한 전형적인 허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 國立工業所有權사무국에 잠정 규정 G條에서 언급된 규정에 의해서 採擇된 工業所有權(商標 및 特許)에 관한 일반규정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보한다.

(마) 發明特許를 보다 깊이 연구하며 또한 會員國들에게 권고내용을 제시한다.

第55條 理事會의 要請에 의해서 해당 委員會는 技術의 開發, 진흥 생산 및 개선을 위해서 부수적인 지역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 기구는 그와같은 기능 이외에 또 현행규정 22條에서 언급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구는 이와같은 정보를 그 기구가 그것과 동일한 사항 및 技術의 營利化를 위한 여건에 관한 정보와 아울러 會員國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

國立등록원의 결정사항은 工業개발사무처, 科學技術사무처 및 國立開發銀行의 任員들로 구성된 諮問委員會가 技術차관을 경유해서 최종결정 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검토한다.

— 先行審査 및 規制條項 —

진술한 규정에 의한 法的인 결과에 대한 自發的인 조치는 이 法律의 규정에 의해서 非自發的인 등록의 대상이 되며, 그와 같은 자발적인 조치는 執行當局에 의한 先行審査의 대상이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法律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技術 또는 商標의 供與者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나) 技術 또는 商標의 受益者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供與者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明示하여야 한다.

(다) 技術移管에 관한 法律에서는 이 기술이 관에 의해서 受益者가 달성하고자 하는 技術的인 目的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라) 技術供與者는 그가 이 法律 내용을 熟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切명사항.

■ 브라질 ■

브라질에서는 技術協定에 관한 기술경제적인 평가는 다음에 요약된 바와같은 “工業技術提供”에 대한 契約의 범주내에서 工業 및 貿易省산하의 國立工業所有權研究院(INPI)이 수행하고 있다.

— 目的 —

“工業技術提供”에 대한 契約은 브라질에서 출원하였거나 또는 승인된 工業所有權에 의해서 망라되고 있지 않은 知識 및 技術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한 契約이다. 이 契約은 消費品 또는 일반적인 資料生産을 위해서 적용된다.

이 契約은 특히 다음사항을 망라해야 한다.

(가) 技術工學 資料를 獲得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技術開發의 方法論을 포함하는 加工 또는

生産에 대한 모든 기술공학 資料는 기술정보, 관계서류, 고정된 규칙, 工業用意匠, 운영지시 및 제품제조를 허용하는 기타 모든 요소들을 근거로 작성된다.

(나) 加工 또는 生産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資料 및 정보의 提供.

(다) 資料를 제공하는 기술 인력에 의한 기술 보조의 제공 및 기술을 받아들이는 人力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훈련교육.

一 國立工業所有權研究院의 機能—

第1條 國立工業所有權研究院(INPI)은 工業貿易省에 부속된 自治聯邦지구로서 설치되었다. 聯邦지구에 研究院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이 모든 업무수행을 위한 本源地이다.

單獨項目: 이 研究院은 그의 資產, 所得 및 이 研究院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 研究院의 主要한 目的 수행과정에서 파생된 서비스(업무)에 관해서 國家次元의 특권을 享有한다.

第2條 이 研究院의 主要한 목적은 國家次元에서 工業所有權의 社會的, 經濟的, 法律的 및 기술적인 기능에 관한 法律規定을 實行하는 것이다.

單獨項目: 이 研究院이 활동할 어떠한 다른 임무에 대한 偏見없이 이 研究院은 技術移管을 促進하며 규제하고 또한 特許權에 대한 交渉 및 이용에 대한 여건을 改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인 국가경제발전 目的을 위해서 採擇된다. 이 研究院은 또한 工業所有權에 관한 署名, 비준 協約의 無効公告, 條約, 契約 및 協定에 관한 권고를 한다.

第5條 이 研究院 院長은 工業, 貿易省長官에 의해서 指名되며 그는 브라질共和國 大統領에 의해서만 任命되며 解任된다.

第6條 이 研究院의 사무국은 이 研究院의 여러기구의 구조, 임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사무국 직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한다.

■ 멕시코 ■

1978년에는 外國投資登錄部 및 技術移管을 관장하는 부서가 統合되었으며, 技術移管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第4條 第2條에서 言及된 法律, 協定 또는 契約書를 수록하고 있는 문서는 外國投資 또는 技術移管을 위한 國家次元의 등록을 위해서 그 업무가 실행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멕시코政府 開發省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이 지정된 기간 동안에 문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등록 사항은 그 실행일로부터 効力を 발생한다. 이 期間의 滿了와 더불어 그 등록사항은 비로소 제출일로부터 効力を 발생한다.

또한 第2條에서 言及된 法律, 協定 또는 契約書에 관한 모든 수정내용은 第2條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工業, 商務省에 등록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이 條項에서 규정된 滿了日字前에 契約 또는 協定을 當事者가 滿了시킬 경우에는 滿了日로부터 60日 이내에 工業, 商務省에 그와 같은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第10條 工業, 商務省은 第2條에서 言及된 契約書, 協定 및 法律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를 工業·商務省이 제출한 후 90日 이내에 技術移管을 위한 國家次元의 등록을 위해서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과시킨다. 工業·商務省이 그의 결정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이 期間이 滿了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法律, 協定 또는 契約서는 技術移管을 위한 國家次元의 등록을 위해서 등록하여야 한다.

第11條 만일 이 法律規定에 위배해서 해당 法律, 協定 또는 契約서가 개정 또는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工業·商務省은 技術移管을 위한 그와 같은 法律, 協定 또는 契約서의 국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第12條 工業·商務省은 언제나 이 法律 규정에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 아시아 및 極東

■ 印度 ■

技術評價委員會(TEC)는 技術的인 관점에서 外國과의 협의를 위한 提案을 審議檢討하며 工業문제허가사무국과 그와같은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政府部署에 의견을 제시한다. TEC, CSIR,

DCSSI 및 정부관계부서등이 제시한 의견들은 심의를 위해서 外國投資協議會에 회부된다. 外國과의 協議의 必要性, 工業의 우선권 및 조건의 合理性 등의 여러분야에 관해서 外國投資協議會(FIB)는 提案을 권유하거나 또는 却下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經濟省 장관은 FIB委員長의 資格으로 최종 승인을 위해서 工業省長官에게 유리한 권고를 제시한다. 그 후에 SIA는 출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고한다.

財務省長官은 外國投資協議會의 委員長 직무를 수행한다. 그는 협의 제안 승인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外國投資協議會 및 工業發展部 SIA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협의 회의 서기업무를 수행한다.

外國投資協議會의 임원은 ① 工業省 과장 ② 石油省 과장 ③ 商務省 과장 ④ 商務省연락부과장 ⑤ 計劃委員會 과장 ⑥ 科學 및 技術部 과장 ⑦ 科學 및 工業조사 연구협의회 국장, ⑧ 해당 정부부서 과장 ⑨ 技術開發局長 등이다.

技術評價委員會는 CSIR과 科學 및 技術部の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技術開發局長이 委員長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印度政府는 현재 여러 政府부서들이 수행하고 있는 外國協議協定の 기록업무를 인수할 國立登錄部 설치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이 기구는 印度의 기업체와 印度政府가 승인한 外國商社間의 技術 및 財政인 협의에 관한 모든 提案에 대한 細部사항을 수록하고 있는 등록부를 보관한다.

그 細部사항은 ① 印度의 기업체명 ② 技術 또는 用役의 해당분야 또는 형태 ③ 製品名 ④ 해당 外國의 國名 및 외국인가자 ⑤ 契約期間 ⑥ 의허가권 보유 비율 및 金額을 表示하는 外國의 衡平참가권 ⑦ (가) 加入技術에 관해서 製品을 위해서 해당 會社에 支拂될 보상금(一時金 또는 年間 特許使用料등 支拂方法이 명시될 것임) (나) 管理訓練 및 外國人 채용등 기술적인 용역에 관해서 해당 會社에 支拂될 보상금 ⑧ 技術協定の 결과로 기대되는 印度企業體의 年間 예상 生産量 등이다.

이 기구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① 인도 회사로부터의 年間 회수액을 근거로 한 여러 제안 處理에 대한 監督.

② 확보한 技術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및 개발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印度상사가 취한 조치의 심의.

③ 제공된 技術向上을 위해서 인도상사가 협력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後續措置

④ 製品의 品質을 규정된 사양내용과 비교 검토.

⑤ 협력 당사자의 工業부문의 인도 상사의 피 고용인에게 제공된 訓練시설 및 인도상사에 파견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用役에 관한 보고서의 심의 검토.

⑥ 原料, 기계의 현대화 및 최종제품생산 사양서 내용 개선 등에 관한 기술 적용을 위한 추가 조치의 심사 등이다.

■ 필리핀 ■

技術移管協議體의 機能

第1部 一般의인 機能, 이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機能을 수행한다.

(가) 技術移管 분야에서 政府의 開發 및 규제적인 역할의 집중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하는 우선순위 제도를 포함하는 政策수립.

(나) 經濟政算에 效率의인 시행을 위한 규정 및 규칙과 技術移管에 대한 指針書를 공포한다.

(다) 技術移管에 대한 모든 政府活動에 대한 협조제도를 設立하며, 또한 特別히 技術移管이 國家發展에 미치는 影響을 결정하는 면에서의 여러 政府部處間의 계속적이며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라) 技術移管에 관한 政策문제등 여러 문제점 및 代案에 관한 관계, 政府部處間, 民間分野 및 一般人에게 그들 상호간의 계속적인 아이디어 및 정보교환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 이 協議體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必要한 기타 機能을 수행한다.

第2部 特別機能

위에서 모든 技術移管 조치사항은 이 協議體

에 등록신고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는 이 協議體가 수립한 技術移管 政策의 大義名분에 비추어서 적절한 평가를 한 후에 이행한다. 이 신고는 이 協議體 및 회원기관이, 소요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허가의 대상이 된다.

—登錄의 要件—

第1部 技術移管 조치사항

技術移管 신고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은 2부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協議體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登錄은 출원양식 TTB-1을 첨부하여 2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와같은 등록사항에는 ①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②技術受益 당사자에 대한 정보 ③技術供與者에 대한 정보등이 망라되어야 한다.

第2部 添附書類

出願자가 그 出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技術受益당사자의 精算書가 添附된 財政證憑書類. 만일 出願자가 3년이상 營利活動을 하여 왔을 경우에는 利潤 및 손익계산서 및 과거 3年 동안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출원자가 3년이내의 영리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期間中の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證憑書類를 提出해야 한다.

(나) 앞으로 5年동안의 技術受益 당사자에 대한 예상 재정증빙진술서.

(다) 해당이 있을 경우에는 特許 또는 商標登錄에 관한 證憑書類.

(라) 기타 이 協議體가 必要로 하는 證憑書類 등이다.

第3部 公式의인 受諾日字

出願자가 이 協議體의 모든 要求事項을 모두 만족시킨 날자를 公式의인 受諾日字로 간주한다. 이와같은 사항은 出願登錄簿에 적절히 記錄된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出願자가 登錄出願에 관한 要求사항중 어느 하나라도 순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出願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 연장을 協議體에 要請하지 않은 한 出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評價節次—

第1部 評價의 범주

이 協議體를 보조하는 技術 職員들은 이 協議體가 설정한 政策 및 지침서의 大義名분에 비추어서 협정이 法律的 經濟的 및 技術的인 觀點을 감안하여 모든 협정의 條件들을 評價하여야 한다.

第2部 필요한 修正事項

技術移管 조치사항에 관한 政策 및 지침서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協定 당사자는 이 協議體의 권유에 의해서 評價期間中에는 언제라도 이 協定을 修正 또는 改正할 수 있다. 이와같은 修正 또는 改正事項은 조치가 있는 후 5日내에 이 協議體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3部 決定事項

이 協議體는 協定登錄을 公式의으로 누락한 날자로부터 60日 이내에 그 협정등록사항의 승인 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第2부의 규정에 의해서 評價 期間中에 이 協定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前記한 60日中 殘留期間 또는 수정된 協定이 이 協議體에 提出된 날로부터 45日이내에 즉, 이 두 기간중 어느것이건 보다 긴 期間中에 이 協議體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期間이 滿了되었는데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協定은 自動的으로 승인되어 登錄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①規則 第5章 第1部 C 및 d 項과 第3부에 위배되는 협정 규정은 記入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②技術 또는 工業權에 대한 代價가 이 協議體가 설정한 최대한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 등록부결에 대한 이 協議體의 결정사항에는 부결에 대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第4部 承認의 通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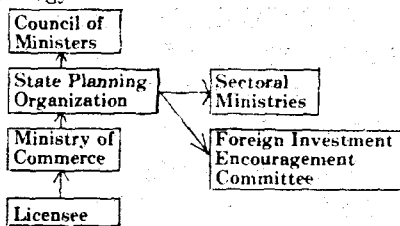
이 規則의 第3部에서 言及된 해당기간중에 만족할만한 결정을 내린 후에 이 協議體는 승인 통고를 발표하며 이 통고는 登錄에 관한 條件을 명시한다.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出願자는 30日 이내에 그의 수락 여부 및 필요한 書類 또는 개정사항을 協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중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부결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5部 契約書草案

出願者는 契約을 締結하기 전에 契約書草案을 審議할 수 있도록 이 協議體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草案을 근거로 승인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계약이 체결되고 公式的인 出願이 제출될 때까지는 등록이 保留된다.

■ 터어키 ■

Figure: Organization setup regulating the flow of technology.



外國投資促進委員會의 機能

第8條 (가) 法律이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委員會가 구성되어 있다. 委員長職은 터어키共和國 中央銀行 전무가 맡고 있으며, 재무성국장, 국내상무성국장, 工業省과장, 國內企業省 조사연구기획원위원장 및 商·工 및 物품 교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委員會는 기타 政府部署 및 研究期間 대표들에게 諮問을 求할 수 있다. 이 委員會는 어떠한 出願에 대해서도 제출된 후 적어도 15일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國內 商務省 局長은 이 委員會의 사무총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必要한 경우에는 이 委員會는 사무총장의 權限으로 소집될 수 있다.

委員長 및 委員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정부 부서의 協議體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 이 委員會의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해서 當事者는 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러한 異議申請의 처리는 관계당국 財務省 長官 및 經濟, 商務 및 국가기업체성장관이 決定한다. 이 當局者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된다.

第9條

(가) 經濟 商務省은 이 委員會의 결정에 의해서 現物로 수입된 外國資本의 通關을 명할 權限을 보유하고 있다.

單一화된 허가협정 체결을 위해서 허가수익당 사자는 財務省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출원하며 財務省은 이러한 사항에 관한 재정적인 評價를 하며, 한편 工業 및 技術省은 이 사항에 대한 技術·經濟的인 評價를 내린다.

◎ 아랍諸國

■ 이라크 ■

工業省은 技術導入에 관한 정책수행을 위해서 核心的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技術移管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①工業연합회 ②工業開發部 ③中央銀行 ④工業所有權事務處 ⑤工業調查研究 및 管理事務處 ⑥化學工業所有權事務處등의 대표들로 構成된 特別委員會가 심사분석한다.

때로는 허가수익자도 이 特別委員會에 관여한다.

이 협정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이 委員會는 해당 계약서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여부를 심사하며, 또한 이 계약서중 技術的인 내용을 검토한다. 이 결과에 의해서 이 委員會는 特別 Know-how에 관해서 現存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새로운 것인가를 결정하며 또한 이것과 똑같은 허가에 대한 출원이 과거에 제출되었던가 여부를 확인한다.

固定된 심사평가 및 승인절차는 없다. 즉, 심사평가는 經驗 및 狀況을 참작하여 수행된다.

■ 쿠웨이트 ■

商工省에 부속되어 있는 工業開發委員會는 政府機構內에서 技術移管을 위해서 核心的인 역할을 한다.

商工省長官 또는 次官이 이 委員會 委員長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委員會의 委員은 ①財務 油類省 산하의 尙官 및 관세청 ②商工省 工業部 ③信用貯蓄銀行 기획부 및 쿠웨이트 商工

會議所가 지정하는 民間工業分野 등으로부터 선출된 각 1명씩의 대표등으로 구성된다. 이 委員會의 委員은 任命制이며 그들의 任期는 商工省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가지의 工業開發委員會의 주요한 機能으로는 ①國家産業發展을 促進시키며 ②허가를 공포할 것인가의 권고여부와 工業許可書出願을 연구 검토 한다.

1965年度 施行令 第6號에 의한 製造會社 設立 節次

모든 현존하는 또는 설치중인 製造會社의 所有者 또는 지배인은 이法律施行日로부터 6개월 이내에 商工省 工業部에 登錄을 出願해야 하며 이 出願事項은 特殊登錄部에 기록 보관된다. 모든 製造會社는 이 法律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지 않는 限 登錄을 할 수 없다.

第10條 許可事項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① 해당국가의 經濟的인 要求事項 및 해당국가의 소비성 및 그에 대한 수출의 可能性.

② 해당국가의 社會·經濟的인 要求事項.

③ 公共秩序 또는 公共利益에 損을 주지 않는 企業체의 營業목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第11條 해당장관은 그가 앞으로 공포할 결의 내용에 의해서 ①許可書 出願方法 ②그 出願에 포함될 진술서 ③그와같은 出願을 뒷받침하는 書類 ④回收될 요금 등을 결정한다.

이와같은 許可書出願에는 사업연구내용 및 經濟的인 見解에 관한 보고서가 添附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연구서는 特別히 ①해당사업을 위한 原料의 출처 ②生産費 ③그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資本의 額數 ④기타 必要한 사항등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21條 모든 製造會社들이 고용하는 쿠웨이트의 勞務者 및 事務職員들의 數는 製造會社들이 고용하고 있는 勞務者 및 사무직원들의 總數의 25%에 未達되어서는 안된다. 고용될 충분한 쿠웨이트의 인원들이 없는 경우에는 商工省長官은 해당 會社들이 그러한 規定에 의해서 구축을 완화하여 해당 比率를 輕減시킬 수 있다.

第22條 모든 製造會社들은 職業訓練, 公업관

제 研究 및 調査研究, 生産의 效率性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國家가 수립한 프로그램 및 여러 조치에 국가기관과 더불어 참여해야 할 義務가 있다. 工業開發委員會의 권고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 結果를 公布해야 한다.

■ 모로코 ■

技術移管을 관장하는 特別한 機構는 없다. 技術移管에 관한 協定은 해당사업에 關여하는 부서들이 심의 검토한다. 施行을 위해서 권고된 事業들은 책임장관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또한 交流處와 해당문제를 協議해야 한다.

해당 契約當事者가 選出된 후에 施行令 2.76.479에 의해서 해당 事業을 施行하는 企業體는 건축예정표에 關해서 해당 계약자와 합의를 구해야 하며, 또한 外換局의 承認을 얻어서 그가 거래해야 할 해당 外國銀行을 결정해야 한다. 外換局은 기재구매대금 또는 外國人 보수의 환에 관한 支拂關係 事項을 承認해야 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

모든 技術移管에 관한 사항은 ①財務·經濟省 ②農業省 ③石油省 ④鑛業省 ⑤企劃院의 대표와 工業局長 및 한명의 法律고문으로 구성된 委員會에 의해서 監督을 받는다.

이 委員會는

(가) 제의된 許可 또는 企業이 經濟的인 見解에서 可能性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며,

(나) 出願過程에서 야기되는 모든 물의 또는 異議申請 事項을 審議檢討하며,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法律을 違背하는 企業體들에 대한 懲罰事項을 건의하며,

(라) 施行될 規定 초안을 심의하며,

(마) 商工省長官이 지적하게 될 사항을 검토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承認 및 평가절차는 産業分野事業과 契約, 정비 및 기술용역에 관한 技術協定과는 相異하다.

一産業分野事業一

合作投資에 의한 産業事業에 착수하고자 하는

投資家들은 産業電氣省이 권장하는 工業局長에게 앞으로 製造될 製品의 상세한 내용과 資本豫想額이 명시된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이 申請書에는 상세한 經濟的인 타당성 보고서를 添附할 수 있다. 投資家들은 그러한 타당성 조사를 완성할 수 있는 적절한 期間을 허용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그 후에 工業局은 제시된 製品에 대한 市場需要를 檢討 評價한다. 그 결과 그와같은 製品에 대한 市場需要가 순조로운 경우 投資家들은 상세한 經濟的, 技術的인 면 및 市場性研究書를 제출하도록 최대한 6개월의 기간이 허용된다.

해당 投資家は 工業局 또는 外國資本投資委員會事務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허가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 보고서와 같이 投資委員會事務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委員會의 事務局은 이 제출된 申請書의 寫本 1부씩을 工業局과 工業研究 및 개발센터에 檢討評價를 위해서 제공한다. 이 委員會事務局이 이 두 기구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事務局은 申請書와 評價 결과를 外國資本投資委員會에 제출한다. 外國資本投資委員會는 권고내용을 작성하여 工業電氣省에 제출한다.

工業電氣省長官은 投資委員會의 권유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許可書發給을 承認하는 工業電氣省의 결정내용을 공포하다.

契約 정비 및 기술용역에 대한 許可書에 대해서는 출원한 사업에 관한 8개의 신청서양식 사본을 外國資本投資委員會事務局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事務局은 그 申請書를 委員會에 제출하며 이 委員會는 그의 권고사항을 工業電氣省에 提出한다. 工業電氣省長官은 그가 委員會의 권유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許可書發給承認의 결정사항을 公布한다.

■ 수 단 ■

技術導入을 권장하는 特別한 政府機構는 없다. 모든 技術移管協定은 해당 政府部署에 의해서 檢討 評價되어 特許權使用料, 國內源料의 使用量, 許可期間 및 새로운 技術의 내용등을 基

準으로 내용이 개정되거나 또는 否認된다. 이와 같은 協定을 承認하기 위해서는 해당 政府部署는 商務補給省, 工業鑛業省 및 수단 銀行과 特許權이양에 관해서 協議를 도모한다.

■ 튀니지 ■

技術移管은 ①해당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政府部署의 대표 ②企劃省 ③財務省 ④首席政府部署 대표들 ⑤特定民間代表 ⑥어떤 경우에는 外國人 자문으로 구성된 特別委員會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이 特別委員會는 해당 會社들의 技術에 관한 경력이 어떠한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한다. 이 特別委員會는 기술이관에 관한 細部項目을 설정하며, 입찰관계서류를 준비한 후 입찰을 公表한다. 應札을 받은 후에 이 委員會는 그 내용을 技術 및 經濟的인 관점에서 검토하며, 그 결과를 해당 政府部署는 최종적으로 承認 또는 부결한다.

■ 알제리 ■

外國技術導入을 권장하고 있는 기구는 알제리 標準 및 工業所有權研究院(INAPI)이며, 이 기구는 모든 工業所有權에 관한 국립 표준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工業所有權에 관한 立法事項의 處理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 INAPI는 輕工業을 권장하는 政府部署 기구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工業發展 部門을 권장하고 있는 政府部署들이 이 研究院의 업무수행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財務省이 公布한 2개의 法律에 의해서 INAPI는 工業所有權事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허가 계약서를 검토할 책임을 지고 있다. 特許權事項은 그 범위가 넓지 못하며, 또한 外國의 商標는 사실상 使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財務省의 규칙은 당초에 기대하였던 것보다는 해당 범주와 그 重要性이 희박하다.

外國의 許可協定の 數는 현재로서는 적으나 그 數는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INAPI는 이와같은 種類의 契約書를 嚴密히 分析하는 것이 해당업무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서 作成을 위해서 참여하는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계속>